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춘 곤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 춘 곤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발의취지를 말씀 드리면,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제21조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한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한편, 약어를 규정하는 등의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 운용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